

03

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



신설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(법 제53조3)

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

—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이수

▶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

04

새롭게 도입된 안전강화 규정



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(법 제53조제7항)

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

확인 기록을 작성·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
하여야 함

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(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)

▶ 위반 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

신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(법 제53조의4)

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

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(死傷)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

그 정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,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의
장은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



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

2020.11.27 시행예정

01 통학버스 운전자

» 미신고 운행 (제52조제1항)

» **신설**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*을 갖추지 아니하고
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전자 (제52조제3항)

*△자동차안전기준(자동차규칙)에서 정한 구조
△어린이보호표지 △보험 △소유관계

과태료
30만원

» **강화**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(제53조제3항)

» **신설**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
동승표지 부착 (제53조제6항)

30만원이하
벌금, 구류

»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(제52조제2항)

과태료 3만원

02 통학버스 운전자

»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(제53조제1항)

»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(제53조제2항)

» **신설**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·
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
하는 것을 확인(제53조의5) ※ 2022. 11. 26.까지 적용

범칙금 13만원
벌점 30점

» **강화**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(제53조제4항)

» **강화**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(제53조제5항)

30만원이하
벌금, 구류
벌점 30점

» 어린이 안전띠 착용(제53조제2항)

과태료 6만원

03 일반 운전자

»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
(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(제51조제1항))

»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
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반대방향 진행 차량 일시정지
후 서행(제51조제2항)

»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(제51조제3항)

범칙금 9만원
벌점 30점
(승용차 기준)

»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위반(제52조제4항)

범칙금 3만원

04 안전교육

» 운전자·운전자·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(제53조의3)

—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

» **신설**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
통학버스 운전자(제53조제7항)

과태료 8만원
(교육감·지자체장)



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!



01 |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



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(법 제52조제1항)

어린이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

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시설

도로교통법 상 교육시설

2020.11.27 시행예정

기존

추가

유치원

유아교육진흥원

대안학교

초등학교

외국인학교

교습소

특수학교

아동복지시설

청소년수련시설

어린이집

장애인복지시설

공공도서관

학원

시·도평생교육진흥원

시·군·구평생학습관

체육시설

사회복지시설

사회복지관

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

2020.11.20 시행예정

등록 체육시설업

골프

스키

자동차경주장업

신고 체육시설업

요트

조정

카누

빙상

승마

종합체육시설

수영장

체육도장

골프연습장

체력단련장

당구장

설매장

야구장업

가상체험 체육시설업

7종 | 권투, 레슬링, 태권도, 유도, 검도, 우슈, 합기도

추가

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에 추가(축구클럽 등)

어린이(13세미만)교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

–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 시 포함

▶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

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 (법 제52조제3항)

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*에서 정한 구조, 어린이보호표지, 보험,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함

*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
어린이통학버스 요건

구조·장치

좌석부착장치

황색도색

어린이보호표지

정지표시장치

좌석규격

접이식좌석

좌석안전띠

보조발판

표시등

광각실외후사경

후방카메라

후방경고음

하차확인장치

가시광선투과율 70%이상

어린이보호표지

▶ 통학버스 앞면 우측상단, 뒷면 좌우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곳

보험

▶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

소유관계

▶ 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

▶ 교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

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의 경우

–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요건이 변경된 경우 단속 대상임

▶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

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(법 제53조제3항)

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

– 동승보호자는 승·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의 경우

▶ **기존**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 부과

▶ **강화**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이하 벌금·구류

신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(법 제53조제6항)

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,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됨

–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(보호자동승표지)

▶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원 이하 벌금·구류

02 |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



신설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(법 제53조5)

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·하차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·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

– 새롭게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2년간 유예하면서 운전자에게 부여된 한시적 규정(2022년 11월 26일까지 적용)

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

▶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, 벌점 30점부과

강화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(법 제53조제4항, 5항)

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할 의무 및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작동 의무

하차 확인 의무 위반시 각 조항별

▶ **기존**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, 벌점 30점 부과

▶ **강화**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30만원이하 벌금·구류, 벌점 30점 부과